

#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시·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(안 제3조의4제3호 신설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